

2024학년도 2학기 적용 수업운영 기준(Ver 1)

구분	내용				비고	
기본방침	1. 대상자 : 일반 학생, 성인학습자반, 전공심화과정, 전문기술석사과정 ※ 아래 수업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					
	수업형태	운영 기준				
	대면수업	-강의실에서 면대면 수업 운영을 원칙 ※ 대면 수업 중 원격수업 허용 기준 - 총 15주 중 3주까지 원격수업 허용 (3주는 1주차~3주차 연속 또는 3주 연속의 의미는 아님) ※ 원격수업 보강은 해당 주 동일과목 “반” 전체에 적용 가능(선택사항) ★(성인학습자반) 전체 수업 시수의 50%미만 원격수업 가능(평가활동 제외)				
	블렌디드 수업	-전체 수업 시수의 50~70%미만 원격 수업 운영(평가활동 제외) -교과목 개설은 교수학습원격지원센터에 신청하여 해당부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-시수인정은 「강의료지급규정 제3조」에 따름 -블렌디드 수업 개설 신청은 반드시 학과 내 논의 후 신청(교수학습원격지원센터에서 공지한 ‘교육혁신기반 이러닝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’ 참조-학과장 서명 후 제출, 날인 불인정) ★(성인학습자반) 수업 개설 신청 및 심의 생략(평가활동 제외)				
	원격수업	-전체 수업 시수의 70%이상 원격 수업 운영(평가활동 제외) -원격수업 개설 신청 및 「원격수업관리위원회」의 심의를 받아야 함 -시수인정은 「강의료지급규정 제3조」에 따름 ※ 학과에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, 성인학습자반, 전공심화과정, 전문기술석사과정은 100% 허용 ★(성인학습자반) 수업 개설 신청 및 심의 생략(평가활동 제외)				
하이브리드 수업	-대면 수업과 원격수업을 혼합하여 실시간 동시 수업 - 마이스터 전문기술석사과정에 한하여 허용함					
※ 학기초 강의계획 수립 시 동일과목 수업은 하나의 수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진행 예시) A과목 ‘가 ~ 라’ 반을 운영하는 경우 - ‘가 ~ 라’ 반을 “전체 대면” 또는 “전체 원격”						
시험	구분	기간	비고			
	중간고사	10.21(월)~10.26(토)	-대면 시험(비대면 시험 불허) *학과 및 교과목 특성에 따라 시험기간 전·후 1주간 시험 가능			
	기말고사	12.9(월)~12.14(토)				
성적평가	평가방법	-상대평가(A학점(A+ 및 A등급) 성적분포 비율 50%이하) 및 절대평가 선택(성적처리 지침 적용) -상대평가 : 학습자의 학업성과를 다른 학생의 성적과 비교하여 평가 -절대평가 :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 *절대평가는 학습자에게 학기초에 제시된 명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을 의미(성적조정불가) - 절대평가가 학습자에게 상위등급 성적으로 무분별하게 부여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- 예시) 90점 이상만 A등급이라고 할 때, 100명 중 5명이 90점을 넘었다면 5명만 A등급을 줄 수 있음				
		배점비율	총점	출석	중간고사	기말고사
			100점	20점	80점	
*교과 담당교원 자율 결정						

□원격(비대면) 수업 기준

구분	내 용
기본방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강의 영상은 신규 촬영을 원칙*으로 함. 단, 일반학생과 성인학습자가 혼합반으로 구성되어 부득이 분할수업을 할 경우 기존 강의 콘텐츠 사용가능.

*미 준수 시 결과의 책임은 담당교원에게 있음.

- 원격(비대면)수업에 대한 매 주차 모니터링 결과, 기준 미 충족 강좌(기간 내 콘텐츠 미탑재, 콘텐츠 시간미달, 퀴즈-과제 등 없음)에 대하여 해당 교원에게 통보 후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“미 충족 교원”에 대해 패널티*를 적용하는 방안이 현재 규정 개정 진행중에 있음

*패널티 : 전임교원 업적평가에 반영, 비전임교원 재임용 제한 등

- 원격수업은 우리대학 LMS(통합학습관리시스템)를 활용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. 단, 다른 플랫폼을 활용한 경우 교육활동 증빙자료*는 별도 보관해야 함.

*공지내용 캡처, 강의자료, 과제 등 3년간 교과목 담당교수 보관(교무지원팀 제출 요구시 제출)

- 원격수업 1차시(1시수당) 수업시간은 강의콘텐츠 진행(재생)시간,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질의·응답, 토의토론 참여시간, 과제 관련 활동 시간 등을 포함하는 전체 교수-학습 활동시간을 포함하여 50분으로 구성하여야 함.

① 원격수업 주차별 강의계획 제시

② 콘텐츠 구성은 다음을 권장함.



③ 원격수업 참여활동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명확한 평가기준 제시

- 강의콘텐츠 진행(재생) 시간이 25분 이상(1시수당)되도록 제작하여야 함.

동영상 콘텐츠 재생시간 (A)	교수-학습 활동 시간 (B)	총 수업 운영시간 (A+B)
최소 25분 이상 (1시수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퀴즈(문항 수는 교수자 자율결정) · 과제관련 활동 시간 · 질의·응답 · 토의·토론 참여시간 ※ 위 활동 중 1가지 이상 포함 	A+B = 50분

비고 1) 강의콘텐츠 진행(재생) 시간이 40분 이상(1시수당)인 경우 총 수업 운영시간을 50분으로 인정

2) 1시수당 1개 이상의 콘텐츠로 구성하되, 2시수 이상인 경우 전체 콘텐츠 재생시간은 시수당 평균 25분 이상을 충족하면 됨.

예) A교과목(2학점, 2시수) → 1차시 콘텐츠 재생시간(35분), 2차시 콘텐츠 재생시간(15분) 가능

3) 필요 이상의 과제물로 인해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함(주차당 1개 이상 권장)

- 원격수업 수강학생의 출석은 매 학년도 학사계획에 의거하여 주차 개시요일(00:00)부터 일주일간(다음 주차 개시요일 전일(23:59)까지)으로 적용함.

구분	내 용
출석	해당 주차의 차시별 모든 동영상 출석인정 기간 내에 수강완료 한 경우
지각	해당 주차의 차시별 모든 동영상을 출석인정 기간이 지나고 수강완료 한 경우
결석	해당 주차의 차시별 모든 동영상을 수강 하지 않은 경우

- Zoom활용 실시간 화상수업의 수업시간(1시수당)은 25분이상 진행을 권장하고 과제 또는 퀴즈 출제 등 별도의 교수-학습활동을 포함하여 시수와 동일하게 진행하여야 함
- LMS 연동 Zoom수업의 경우, 학습이력이 저장되므로, 녹화 영상을 LMS에 탑재할 필요 없음. 단, LMS와 연동되지 않는 화상수업의 경우(웨일온, 웹엑스, Zoom 포함), 출석 확인 증빙과 수업 녹화 영상을 별도 보관해야 함
- 온라인 매체를 활용할 경우 모든 저작물(영상, 삽화, 디자인, 캐릭터, 음원, 폰트 등)은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. 유튜브 등과 같은 온라인 매체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주의하여야 함.